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8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의료법」 등의 건강보험 규정 개정사항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안 제9조,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별지 제3~6호서식, 안 별첨 2, 안 별표 5)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근거 규정 등 변경된 건강보험 규정 체계 및 세부항목 개정사항(신설·변경·삭제 등) 반영하여 제9조제4항 및 별첨 2 개정
- '자문형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따라 제20조제3항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JT003) 및 신설(JT034, JT035)
- 진료기록부 등 진료수가 심사자료를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도록 제24조제3항 신설
-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수가 신설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개정(별지 제3~6호서식), 전자문서 작성방법(진료수가 명세서) 개정(별첨 2)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신설(JT029)
- 소아 '수술료' 및 '마취료' 수가 가산 적용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신설(JT030)
- '심전도 감시(홀터기록)' 수가 세분화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신설(JT036)
- 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회수 및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MT059)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 관련

(안 별지 제9호서식, 안 별표 5)

-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JJ006)

-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토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자보입원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진료비 분리청구를 인정함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MT015) 및 신설(MJ006)

○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 (안 제2조, 안 제28조, 안 별지 제3~8호서식, 안 별지 제17호서식, 안 별첨 1, 안 별표 5)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2조제4호나목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료수가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심사 기간이 변경되어 제28조 및 이의제기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18.3.27) 이후 진료수가 청구 소멸시효(3년)가 도과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별지 제3~8호서식) 개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면서식 작성방법(별첨 1)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 5) 개정(MT016)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년 8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872, 팩스 : 044-201-5587)